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8,673,082	14,060,192
일반회계	401,330,083	12,039,902
특별회계	67,342,999	2,020,290
공기업특별회계	55,332,455	1,659,974
공영개발특별회계	15,371,673	461,150
하수도특별회계	21,777,045	653,31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183,737	545,512
기타특별회계	12,010,544	360,31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27,956	15,839
의료급여특별회계	362,770	10,8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98,000	5,94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547,546	106,426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509,479	45,28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82,219	47,467
수질개선특별회계	4,181,574	125,4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1,000	3,0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이월사업비는 별첨과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73,25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